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13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체육단체 운영 안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을 “보조할 수 있다”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안 제5조 1항)
- 나.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원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항, 3항)
- 다. 그 밖에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을 규정에 맞게 개정함 (안 제1조,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0. 4. ~ 10. 24.):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3) 기획예산과: 규제심사(해당 없음)

4) 가족정책과: 성별영향평가(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를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로, “의하여”를 “따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력”을 “구민의 체력”으로,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로, “강서구장애인체육회”를 “강서구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로,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p> <p><신설></p> <p><신설></p>	<p>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 따라 ----- ----- 구민의 체력----- -----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p> <p>제5조(운영비 지원) 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 강서구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 -- 보조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의 ----- --</p> <p>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p> <p>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내용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 성 자

-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담당자: 임기제 행정8급 김경환 2600-6410)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2-37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문화체육과	통보(조치)일		2022. 10.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조례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관련규정 정비를 통해 체육단체 운영 안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을 “보조할 수 있다” 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로 개정함 (안 제5조 1항)
- 나.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원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항, 3항)
- 다.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을 규정에 맞게 개정함 (안 제1조, 제5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강서구체육회 및 강서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40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명	김경환	전화번호 02-2600-641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안'은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관련규정 정비를 통해 체육단체 운영 안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입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			
문화체육과장 귀하			

【 관계 법령 】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전문개정 2016. 2. 3.]

[시행일: 2022. 8. 11.] 제18조